제94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, 정보 제공의 요청 등(신설) ○ 농식품부장관이나 시 ·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· 정보 * ▲과원의 소유주 및 임차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, ▲과원(과실수 재배하는 밭) 소재지 주소, 과종 및 품종, 재배면적, 수령 등 과원*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▲가지치기 등 농작업 참여 인력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▲기타 약제방제확인서, 농작업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○ 농식품부장관이나 시 · 도지사가 병해충방제에 필요한 자료 ·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식물 – ▲사과, ▲배, ▲그 밖에 장미과 식물 ▶식물방역법 제33조의4 2.병해충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(신설) ○ 식물재배자*가 이수해야 하는 예방교육기준 규정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(동 개정안 제3조의6 : 사과, 배, 그밖의 장미과 식물)을 재배하는 자	1.비중요 2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규정항목</th><th>세부기준</th></tr>
<tr><td>교육
대상자</td><td>식물재배자(사과, 배, 그밖의 장미과 식물 재배자)</td></tr>
<tr><td>교육기관</td><td>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도·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시·군 농업기술센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다른 조합, 대학 등</td></tr>
<tr><td>교육내용</td><td>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실천사항 등</td></tr>
<tr><td>교육방법</td><td>집합교육, 영상교육</td></tr>
<tr><td>이수시간</td><td>연 1회 이상 교육 참여하되, 누적 1시간 이상 이수</td></tr>
<tr><td>이수확인</td><td>이수한 기관의 수료증 또는 교육 확인서</td></tr>
</table>
▶식물방역법 제33조의5
</td><td></td></tr>
<tr><td>2</td><td>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
(산업통상자원부)</td><td>1.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, 변경 및 해제(신설)
○ 국가핵심기술 목록개정 [별표]
– (신규지정) 상대적 기술우위, 성장 잠재성이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 1개, 원자력 분야 기술 2개, 철도 분야 기술 1개등 총 3개분야 4개기술을 신규지정함
– (기술범위 명확화, 변경)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조선, 자동차 · 철도 등 총 8개분야 24개 기술명을 변경함
– (해제) 일반화되었거나 보편화되어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 3개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함
○ 현재 13개 분야 75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을 13개분야 76개 기술로 확대 · 변경함

▶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별표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자기적합확인 시행에 따른 관련 행정처분 기준 추가 (강화) ① 기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자, 판매자 등이 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시, 변경사항 관리 위반시 행정처분(시정명령, 업무정지 등) 하도록 규정된 세부기준에 자기적합확인 관련 사항 보완 1) 자기적합확인 표시 하지 않은 경우 – 1차 : 시정명령, 2차 : 생산 · 수입 · 판매 또는 사용중지(1개월), 3차 이상 : 생산 · 수입 · 판매 또는 사용중지(2개월) 2)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의 변경 사항을 서면관리 · 공개하지 않은 경우 – (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) 1차 : 시정명령, 2차 : 제조 · 수입 · 판매 중지(2개월), 3차 이상 : 취소 – (그 밖의 경미한 변경 사항) 1차~ 3차 : 시정명령 ② 국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, 행정처분(적합성평가 취소) 기준 마련 ▶전파법 시행령 제118조	1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4</td><td>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윤리위원회의 구성(강화)
ㅇ 대한수의사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기준 등을 규정
<table><tr><th>규정항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위원수 및
위원장 위촉</td><td>위원장 1명 포함 11명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장이 위촉</td></tr><tr><td>위원 자격
및 위촉</td><td>수의사회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
1. 수의사로서 수의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
2.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, 윤리, 동물복지, 언론,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(⇨ 4명이상)</td></tr><tr><td>위원 임기</td><td>3년, 한번만 연임 가능</td></tr></table>▶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2

2.수의사의 품위 손상행위 신설(신설)
ㅇ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* 신설
* ▲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▲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▲「약사법」 제31조 및 제42조,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

▶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5</td><td>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수의사의 품위 손상행위 행정처분기준 신설(신설)
<table><tr><th rowspan="2">품위손상 행위</th><th colspan="3">처분기준</th></tr><tr><th>1차</th><th>2차</th><th>3차</th></tr><tr><td>▲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</td><td>면허효력 정지 15일</td><td>면허효력 정지 1개월</td><td>면허효력 정지 6개월</td></tr><tr><td>▲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</td><td>면허효력 정지 7일</td><td>면허효력 정지 15일</td><td>면허효력 정지 3개월</td></tr><tr><td>▲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,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</td><td>면허효력 정지 15일</td><td>면허효력 정지 1개월</td><td>면허효력 정지 3개월</td></tr></table>▶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tr><td>6</td><td>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
(산림청)</td><td>1.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(신설)
o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– (지정요건) 희귀·특산식물 30종 이상,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 2명 이상,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함
– (신청서류) 지정신청서에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희귀·특산식물 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
– (운영관리) 보전·관리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, 3년간 보존하도록 함

▶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화재위험 공정의 동시 작업 금지 등(강화) ㅇ 동일 건축물 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은 전면적으로 금지 요구 필요에 따라, 예외적으로 동시 작업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 ▶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조의5.4	1.비중요
8	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화재위험 공정의 동시 작업 금지 등(강화) ㅇ 동일 건축물 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 -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,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차단 등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성 제고 ▶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조의5 2.시공자의 서류 제출 의무 신설(신설) ㅇ 공사시공자가 건설공사를 하도급 시, 하도급 적정성 검토*를 위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요청하는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 제출 의무화 * ▲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▲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▶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조의5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강화(신설) ○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 ○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미마련시 외부평가업무 수행제한 ○ 계열사간 합병은 특수성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(위원회) 동의(의결) 의무화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2.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(신설) ○ 합병목적,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,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*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의 작성 의무화 * ①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합병가액·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, ③합병에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사유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	1.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(금융위원회)	1.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(신설) ㅇ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에 따른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율체계 마련 – (예치금)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관리방법을 정하고, 사업자 파산등의 경우 예치금 지급절차, 예치금이용료의 이용자 지급 등 규정 * ①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,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을 예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규정 ②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, 국채 ·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 ③ 사업자는 예치금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 지급 – (가상자산)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, 해킹 ·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· 준비금 적립 기준 등 규정 * 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(콜드월렛)하여야 하는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%이상으로 규정 ②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% 이상을 준비금 등으로 적립 ▶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,제3조제5조제9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(금융위원회)	1.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및 신고·보고(신설) ○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소는 거래유형과 금액, 시장영향,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– 거래유의 안내 – 풍문 등의 사실조회·결과공시 – 주문의 수량·횟수 제한 – 거래중지 조치 ○ 아래와 같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은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·금감원 보고 –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–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▶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조,제4조	1.비중요
12	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6) 개정안 (소방청)	1.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) 일부 개정(강화) ○ 안전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는 소화약제 저장실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도록 함 ○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함 ○ 이산화탄소 소화가스 증기압에 비해 최소사용설계압력(배관설계내압)이 낮아 이를 개선함(고압식 1차측 9.5MPa, 고압식 2차측 및 저압식 4.5MPa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 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(부)압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ㅇ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무취하며,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소화로 소화약제 방출 시 또는 방출 후 배출되지 않은 잔류 소화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취제 설치 규정을 신설함 ▶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6) 제4조,제6조,제8조,제17조,제19조	
13	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 개정안 (소방청)	1.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 일부 개정(강화) ㅇ 배관 등의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, 안전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는 소화약제 저장실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도록 함 ㅇ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함 ㅇ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 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(부)압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▶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,제6조, 제8조, 제17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4	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의료기관의 임종실 시설기준 및 규격 마련(신설) ㅇ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의무 부여 ▶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2.휴·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의무 마련(신설) ㅇ 의료기관의 보유 마약류 적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휴 · 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보유 마약류의 수량 및 처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▶의료법 제40조▶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	1.비중요 2.비중요
15	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경찰청)	1.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요건 등(신설) ㅇ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착용장치로 촬영한 영상・음성기록 및 촬영사실 고지, 보관 기간 설정 - (사용요건)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폭언·폭행 발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 가능 – (고지방법) 불빛, 소리, 안내판, 안내서면, 안내방송, 안내문구 부착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촬영사실 고지 – (보관기간) 원칙적으로 30일간 영상·음성 기록을 보관하되, 증거보전 등 필요한 경우 목적 달성시까지 보관 가능 ▶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,제4조,제6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6	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(신설) ㅇ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 · 규격 신설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의11. 2.식품원료(가르시니아 캄보지아)의 사용기준 강화(강화) ㅇ 껍질추출물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부원료로서 최소량(2% 이하를 사용하여야 하나 1일 섭취량 2.5g을 초과할 수 없다)을 사용하여야 한다.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별표2 3.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(강화) ㅇ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-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(폐지)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별표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7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(신설) ㅇ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액을 청구할 때 해당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함 – 자동차제작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결함 부품을 교체하거나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결함 부품을 교체하거나 시정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2.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절차 (신설) ㅇ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액을 지급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, 지급 기한 및 예외 규정, 보상 청구 시 거부 사유 문서 통지를 규정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4	1.비중요 2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18</td><td>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
(문화체육관광부)</td><td>1.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(신설)
ㅇ 국악·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 신설
– (지정기준)대상요건, 교육과정, 운영여건, 인력·시설 요건 등
<table><tr><th>항목</th><th>요건</th></tr><tr><td>대상요건</td><td>- 국악 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 대학 및 학교
- 관련 공공기관
- 국악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-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단체</td></tr><tr><td>교육과정</td><td>- 국악 문화산업 관련 창업·경영·기획·해외진출 등 과정
- 연간 96시간 이상
- 이론·실습 모두 포함
- 객관적인 교육과정 이수 평가 방법 구비</td></tr><tr><td>운영여건</td><td>- 운영경비 및 예산 확보하고, 교육대상자로부터 받는 교육비가 교육과정 대비 적정수준일 것</td></tr><tr><td>인력요건</td><td>- 내부 교수요원* 및 사무 관리자 각 1명 이상
*▲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상당 ▲관련 석사학위+5년이상 교육·연구경력 ▲박사학위+3년이상 교육·연구경력 ▲관련분야 5년 이상 현장경험</td></tr><tr><td>시설요건</td><td>- 바닥면적이 총 60㎡ 이상(30㎡ 이상 강의실)
- 강의실과 분리된 사무실 및 사무수행에 적합한 설비 구비
- 실기장비, 교육보조재, 조명·영상시설 등 구비</td></tr></table>– (지정유효기간)영제3조④ 3년
▶국악진흥법 시행령 제3조
2.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(신설)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
3.비중요
4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위반차수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 – (위반차수 산정)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 – (경고처분)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개선 통보, 미개선시 위반차수로 간주 – (감경) 사소한 부주의·오류 등(업무정지 → 1/2 내, 지정취소 → 업무정지 3개월 이하) ▶국악진흥법 시행령 제4조 3.지원기관의 지정요건(신설) ○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구체화 – (지정대상) 국악·국악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– (조직인력) 전담조직 및 상근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 ▶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 4.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(신설) ○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(시정명령, 지정취소) 기준을 정함 – (위반차수 산정)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 – (시정기간)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시정통보, 미시정시 2차위반으로 간주	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– (감경) 사소한 부주의·오류 등(2차 위반이라도 1차 위반 처분 적용)
<table>
<tr><th>위반행위</th><th>법률(제16조)</th><th>시행령(별표3)</th></tr>
<tr><td>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>지정취소</td><td>지정취소</td></tr>
<tr><td>나.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</td><td rowspan="2">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</td><td>1차 위반 : 시정명령
2차 위반 : 지정취소</td></tr>
<tr><td>다.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td><td>1차 위반 : 시정명령
2차 위반 : 지정취소</td></tr>
</table>
▶국악진흥법 시행령 제7조</td><td></td></tr>
<tr><td>19</td><td>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
(문화체육관광부)</td><td>1.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(신설)
○ (신청제출서류)규칙제2조 △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△운영경비 조달계획 △교수요원, 사무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△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

▶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tr><td>20</td><td>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
(보건복지부)</td><td>1.행정처분기준 신설(신설)
○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‘마약류 투약·매매·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(교사와 방조를 포함)’ 추가

▶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21</td><td>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
(국방부)</td><td>1.군숙소관리수탁기관 위탁 취소 기준(신설)
o 군 숙소 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기준 신설
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colspan="2">처분기준</th></tr><tr><th>1차</th><th>2차</th></tr><tr><td>❶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(법 제9조의2제2항제1호)</td><td>위탁취소</td><td></td></tr><tr><td>❷수탁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(법 제9조의2제2항제2호)</td><td>시정명령</td><td>위탁취소</td></tr><tr><td>❸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(법 제9조의2제2항제3호)</td><td>시정명령</td><td>위탁취소</td></tr></table>
▶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tr><td>22</td><td>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
(재외동포청)</td><td>1.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추가(강화)
o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을 기존 6월 30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단축 2개월 단축
o 신청서 첨부서류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

▶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tr><td>23</td><td>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
(소방청)</td><td>1.금연구역 표지 설치 (신설)
o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소 종류 및 표지판 표시기준 규정
– 이동탱크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 등에 금연 표지판 설치
– 표지판은 제조소 등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그림 · 문자 활용 및 배색 · 크기 조정

▶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4	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(신설) ○ 제조소 등 내에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기준·방법 등 설정 – (위치) 위험물 저장·취급 제조소 등과 일정한 거리를 이격 – (환기) 가연성 증기·미분이 환기되도록 조치 – (진화) 수동식 소화기, 마른 모래, 소화수 등 배치 ▶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	1.비중요
25	출입국관리법 개정안 (법무부)	1.보호기간 상한 설정 및 보호해제시 조건 부과(신설) ○ (보호기간 상한 설정)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되, 「국가보안법」, 「테러방지법」 등 위반의 죄를 범한 외국인은 최장 36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3조) ○ (보호해제시 조건 부과)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△여권 발급 등 강제퇴거에 필요한 조치 이행 △주거 제한 △정기적 출석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3조의2) ▶출입국관리법 제63조,제63조의2 2.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(신설) ○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로부터 해제된 사람 이 도주 등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회피하거나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는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호기간은 재보호된 날부터 기산 ▶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	1.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피보호자 보호시설 이송(신설) ○ 보호외국인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*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4조) * 의료·송환 전담인력 배치 등 시설·인력·조직 측면에서 일반 보호시설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보호시설로 이송 (전국 29개 보호시설 중 5개) ▶출입국관리법 제64조 4.보호외국인, 관계인 등의 자료제출 협조 의무(신설) ○ 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시 보호외국인·관계인 등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 신설 ▶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7	